

부산직할시사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4. 12. 22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11. 21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4. 11. 24

다. 상 정 일 자 : 제38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
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12. 22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위생과장 윤 종 진)

가. 폐지이유

○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 (1988. 6. 28)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,

○공중위생법 제31조가 법률 제4636호(1993. 12. 27)로 폐지되고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 됨에 따라

○간이상수도 관리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어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부산직할시 사하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.6.28일 제정되어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(공동급수시설의 관리)가 1993.12.27(법률 제 4636호)로 삭제되고 간이상수도에 관한 관리운영이 수도법 제3조제9호의 적용을 받아 자치구 사무에서

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